

의안 번호	625
----------	-----

【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8. 5. 7 (수) · 중 구 청 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08. 5. 7 (수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08. 5. 16 (금)

## 2. 개정이유

- 공무원여비규정이 여비 사후정산제도로 개정·시행(2008.1.1) 되면서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.
- 자가용 사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
-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(私費)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
- 정산제 시행으로 집행단가는 높아져 예산낭비 요인

## 3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확화 (안 제3조)
  -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제1호 다목 적용
-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 적용 배제(안 제4조)
  -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(별표1)
-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 (안 제4조의2)
  - 행정자치부장관→행정안전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→기획재정부장관

## 4. 근거법규

- 공무원 여비규정(대통령령 제20741호, 2008.2.29)

-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 개정안(2008.4.8)

## 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생략
- 관련 법규 발췌 : 『붙임』 참조

## 6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하여 사후정산 하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정액제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은 것을 개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

【 불 임 】

## 공무원여비규정

[일부개정 2008.2.29 대통령령 제20741호]

**제8조의2 (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**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「국고금관리법」 제 24조제 5항의 정부구매카드 (이하 "정부구매카드"라 한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[본조신설 2007.11.13]

**제17조 (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)**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(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)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,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,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8.2.28, 2000.4.18, 2007.11.13, 2008.2.29>

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.

**제18조 (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)**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 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만원을,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<개정 2005.1.7, 2006.1.12, 2006.3.29>

②제1항에서 "근무지내 국내출장"이라 함은 동일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·군 및 도서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 <개정 2007.11.13>

**제24조 (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)**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
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1.7>

**제27조 (전역된 자 등의 여비)**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. <개정 1998.2.28, 1999.5.24, 2000.4.18, 2008.2.29>

②전투경찰,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<개정 2007.11.13>

③국방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2.28, 2000.4.18, 2007.11.13>

## 국가공무원법

**제71조 (휴직) ① 생략**

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 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8>

1. 국제기구, 외국 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,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
2.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
3.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
4.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5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
6. 외국에서 근무·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

③ 생략 ④ 생략

## 지방공무원법

### 제63조 (휴직) ① 생략

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·

1. 국제기구·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
2.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
3.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
4.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5.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
6. 외국에서 근무·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

③ 생략    ④ 생략

## 공용차량관리규정

제4조 (차량의 구분 등)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(전용 및 업무용)·승합용·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,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·중형·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.

②차량의 차종·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·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

<신설 2006.3.29, 2008.2.29>

## 울산광역시중구 관용차량관리규칙

제6조(차량의 배정대상 등) 차량의 차종별 차형·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  
한과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는 별표1과 같다.<개정 2003.2.3><개정  
2007.4.2>